##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

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(이하"법" 이라 한다.)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(이하"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##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

- 제3조(관리기관의 책무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,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부, 소속·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·교육·감사 등을 통해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,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.)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. 지도·감독 한다.
  - ③ 소속·산하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개선대 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공간정보 보안담당관)**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

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(이하 "보안담당관"이라 한다)으로 임명하며,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

- 1. 본부: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과장
- 2. 소속기관: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(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)
- 3. 산하기관 :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
-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공간정보의 생산·구축·관리·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 대책 강구
- 3.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·점검·교육 및 감사
- 4.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
- 5.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
-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·감독한다
- 제5조(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) ①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운영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
  - 1. 본부: 국토정보정책관, 비상안전기획관, 운영지원과장, 국 토정보정책과장, 공간정보진흥과장, 토지정책과장, 수자원 정책과장, 산업입지정책과장, 첨단도로안전과장, 항공정책

과장

- 2. 소속 및 산하기관: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
- ③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과장이 되며, 간사 1인을 둔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비공개·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
- 3. 비공개·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
- 4.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이 결정한다.
- 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 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#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

**제6조(공간정보 분류)**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비공개 공간정보
  - 가.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
  - 나.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
- 2.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
  - 가.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
  - 나.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.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
- 3. 공개 공간정보
  - 가.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
- 나.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<별표1>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공간정보의 취급)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 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.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.

- 제8조(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)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 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·파괴·유출 등을 방지하 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
    - 가. 본부 및 소속기관 : 담당과장(단, 국토관리청과 지방항 공청은 담당국장)
    - 나. 산하기관 :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
  - 2.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
  - 3.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(별지 제1호 서식)
  - 4. 공간정보자료(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)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
  - 5.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
  - 6.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
  -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·전송·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.

#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

제9조(공간정보유통망 관리)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

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·변조,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
  - 가. 본부 및 소속기관 : 담당과장(단, 국토관리청과 지방항 공청은 담당국장)
  - 나. 산하기관 :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
- 2. 침입차단시스템 설치, 운용
- 3.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
- 4.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체 사용 등 보안업 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
- 5. 유통망의 취약점,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
- 제10조(공간정보의 복제·출력 등 제한) ① 비공개 또는 공개 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 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.
  - 1.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 · 관리하는 경우
  - 2.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
  - 3.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
  -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·출력한 때에는 경고문

- )을 표시하고,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·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간정보의 외주용역)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·구축·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후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여야 한다.
  - 1.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
  - 2.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,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
  - 3.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
  - 4.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
  - 5.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-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 를 이용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(공간정보 수집 · 제작 현장사무소 포함)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)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.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,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
- 2.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·카드 인식기 및 자 동잠금장치 설치
- 3.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(단, 생체 · 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)
- 4.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 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
- 5. 비인가 카메라·휴대폰·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 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

# 제13조(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

- 지)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.
- 1.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
- 2.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 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4조(외국인 보안관리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 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1. 신원 확인, 신상기록부 작성 · 유지,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
  - 2. 계약서에 기밀 누설·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 시
  - 3.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 책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, 국가 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 고,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 여야 한다.
- 제15조(안전반출 및 파기계획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·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 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<별표2>와 같다.
  -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#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

- 제16조(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)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,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
  -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성보에 대한 공개신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  - 1. 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
  - 2. 소속 기관·단체 및 직책
  - 3. 사용목적 및 타당성
  - 4. 활용 후 관리대책
- 제17조(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)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·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) ① 관리기 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 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.
  -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.

## 제6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사

- 제19조(보안지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 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
  - 2.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
  - 3. 공간정보의 유출·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 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
  - 4.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보안점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·산하 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.
  - 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과 보안관리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.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점검·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실시계획 : 3.30限(해당 연도 계획)
  - 2. 실시결과 : 12.30限(해당 연도 결과)

- 제21조(보안교육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 산하기 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이상 보 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·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.
- 제22조(보안사고 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· 산하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·장소·내용 및 사고 유발 자 인적사항,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 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·유출·침해·훼손·분실
  - 2.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·훼손·무단 이용
  - 3.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
  - 4.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
  - 5.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
  - ②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23조(보안사고에 대한 조치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국토교통 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(이하"보안관리규정"이라

한다.) 제22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보칙

- 제24조(보안관리규정)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수행을 위하여 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(이하"지침" 이라 한다.) 및 이 보안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③ 영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이 자체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·개정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- **제25조(준용)** 이 보안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  - 1. 보안업무규정
  - 2.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
  - 3.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
  - 4.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
  - 5.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

제26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

공간 정보	등 급	분류 기준								
	비 공 개	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								
항공 사진	공 개 제 한	<ul> <li>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</li> <li>o 2차원좌표(緯・經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자료</li> <li>o 3차원좌표(緯・經・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자료</li> </ul>								
	공 개	<ul> <li>o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표시 불가)</li> <li>o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·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,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.</li> <li>o 단,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거쳐,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수 있다</li> </ul>								
		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								

공간 정보	등 급	분류 기준							
	비 공 개	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							
	공 개 제 한	o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							
		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 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1.5m보다 정밀한 자료							
		o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							
위성 영상		o 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							
	공 개	o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 원 위성자료							
		o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							
		o 단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							
		o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 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							
	비	o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							
	공 개	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포함된 지도							
전자 지도	공	o 군사지도							
	개 제	o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							
	한	o 단, 항공기·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·통							

공간 정보	등급	분 류 기 준							
		신·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 도에 표기							
		o 1:1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							
	공 개	o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지도  o 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:5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·표고값 표시 불가							
	비 공 개	o 접경해역 수심 자료 o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 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 저 영상자료							
해양 공간 정보	공 개 제 한	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o 단,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, 해양레저, 해 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							
	공개	o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수심 o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o 해도, 전자해도 등							
기타 공간 정보	비 공 개	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의 명칭 및 속성자료							
	공 개 제 한	o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o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							

공간 정보	등급	분 류 기 준							
		3차원 공간정보							
	o 단,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								
		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							
		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							
	o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								
		보							
	o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								
	개	o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							
		자료							
o 토양·지질·지번도, 도시·도로 건설계획도 등									

#### <별표 2>

# 국가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

#### 1. 목적

이 계획은 전시사변, 폭동, 천재지변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보관·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(이하 "공간정보"라 한다)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제2조와 같다

## 3.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

- 가. 전쟁,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 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
- 나. 천재지변,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, 전파, 분실, 도 난,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
- 다. 적, 무장공비,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
- 라.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

#### 4. 시행책임

가.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

## (1)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

공간정보 보안담당관(이하 "보안담당관"이라 한다.) 전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후 반출명령을 받아 보안관리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.

## (2) 보안관리 책임자의 반출조치

- (가)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은 각 부서 해당공간보 취급 소속 담 당직원이 된다.
- (나)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반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.

#### (다) 반출

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.

# (라) 반출시 호위

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.

## 나.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

# (1)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

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 밀, 비공개, 공개제한, 공개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반출을 명한후 소속직원을 비상소집한다.

# (2) 반출조치

(가) 안전함 개방,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·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.

## (나)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

당직책임자는 숙직자(수위 포함)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·국과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수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.

#### (다) 반출조의 반출작업

반출조는 해당 실·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 하여 지리 정보 등을 반출한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주비를 완료한다.

#### (라) 반출

반출과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.

(마) 반출시 호위

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반출조원이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.

## 5.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

# 가. 반출장소

- (1)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(2)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.

## 나. 파기절차 및 장소

(1) 적, 무장공비,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

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.

(2)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,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 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다.

### 6. 최종확인 및 보고

보안담당관은 반출 또는 파기여부를 확인후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

관리 번호	제작 일자	제 목	형태	수량 (건)	보호 기간	보관 장소	비고

<sup>\*</sup>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

## <별지 제2호 서식 >

# 공간정보자료 복제・출력대장

일자	제	목	자료 구분	건수 (매수)	출력자 (복제자)	사 유	열람 • 수령자		예고문	승인관
							소속	성명	-11-2-12	

<sup>\*</sup> 자료 구분란에는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으로 기재